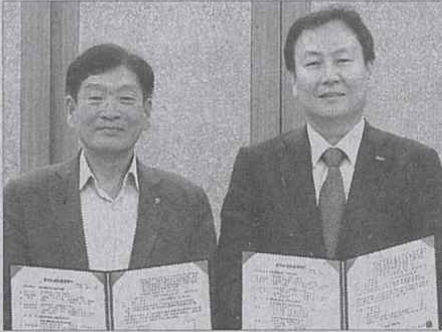


춘천 NH타운 시공사에 대명건설 선정



◇춘천농협(조합장:임태환)은 24일 조합 소회의실에서 농산물유통센터 'NH타운' 신축공사 시공 및 감리 계약을 체결했다.

감리에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올 하반기 착공 2021년 완공

속보=춘천농협 농산물유통센터 'NH타운' 신축공사(본보 지난 13일자 7면 보도) 시공사로 (주)대명건설이 최종 선정됐다. 감리는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로 결정됐다.

춘천농협은 24일 농협 소회의실에서 임태환 조합장과 이태일 (주)대명

건설 대표이사, 김태규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 체결식을 갖고 안전을 제일로 하는 완성도 높은 건축물 준공을 다짐했다.

건축·전기·통신공사에는 지역의 무공동비율 20%가 적용된다. NH타운은 춘천시 석사동 980 일원에 지하 3층~지상 8층, 연면적 4만2,063㎡ 규모로 건립되며 올 하반기 착공해 2021년 완공 예정이다. 백진용기자

아하! 그렇구나

하도급법에 의한 벌점제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은 벌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

나. 벌점은 조치 유형에 따라 다르다. 경고는 0.25점, 시정명령은 2.0점, 과징금 부과는 2.5점, 고발은 3.0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2018년 10월16일 이후부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정당한 이유 없는 하도급대금 감액 △원사업자가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보복조치를 하는 행위 등 4가지 경우에는 벌점이 더욱 강화되어 과징금은 2.6점, 고발은 5.1점이 부과된다.

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최근 3년간 벌점 합계가 5점을 초과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해야 한다.

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와 같이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가. 건설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의 내용을 숙지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4가지 행위의 경우 과징금은 2.6점, 고발은 5.1점의 벌점이 부과되어, 최근 3년간 과징금은 2회, 고발은 1회만 받아도 바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발은 이른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제64조 제3항에 의거해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0.2.11. 선고 98두5941 판

결)에 비추어, 하도급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요청 자체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어렵다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 특히 건설업의 대부분이나 상당부분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기업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주의해야 한다.

라. 건설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착오로 하도급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소한의 조치를 받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 일단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한번 조치를 받게 되면, 3년 내에 다시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엄기섭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